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 법률안

## (박완주의원 대표발의)

|            |       |
|------------|-------|
| 의 안<br>번 호 | 11828 |
|------------|-------|

발의연월일 : 2018. 2. 8.

발 의 자 : 박완주 · 이개호 · 고용진

박 정 · 이철희 · 김정우

노웅래 · 전혜숙 · 백혜련

윤관석 · 박용진 · 심기준

의원(12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에 농업기계를 임대함으로써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경감하고, 농작업 기계화율을 제고하여 농촌의 일손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임.

그런데 농림축산식품부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농기계임대사업소가 보유 중인 57,688대의 농업기계 중 5.1%인 2,914대는 하루도 임대되지 않았고, 44.1%인 25,443대는 임대실적이 13일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 임대수요가 많지 않은 농업기계 구입을 사전에 막고 농업기계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의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제3항).

##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3항 중 “촉진하기”를 “시행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기”로 한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 ② (생 략)</p> <p>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u>촉진하기</u> 위하여 농업기계 전문인력의 확보,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과 농업인에 대한 홍보 등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p> <p>④ · ⑤ (생 략)</p> | <p>제8조의2(농업기계 임대사업의 촉진)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br/>-----<u>시행할 때에</u><br/><u>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u><br/><u>는 바에 따라 미리 임대용 농업</u><br/><u>기계에 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u><br/><u>고 농업기계 임대사업을 촉진하</u><br/><u>기</u><br/>-----<br/>-----<br/>-----.</p> <p>④ · ⑤ (현행과 같음)</p> |